

수원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19나740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19나74003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7가단13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대중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치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옥필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채은

변론 종결2021. 9. 29.

판결 선고2021. 10. 27.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7가단13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5. 19. 접수 제164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649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각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각 "피고 B"를 일괄하여 "피고"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 내지 11행(표 안의 행 포함, 이하 같다)의 "별지 목록 순번 제1~8번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순번 기재 각 부동산"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증인 AD, Q"을 "제1심 증인 AD, Q"으로 수정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Z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Z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3,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2019. 11. 5.자 총중 총회(이하 '2019년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회장 투표 결과 Z이 총 투표 참가인 757명 중 393표를 득표하여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 ②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회장의 임기는 3년인 사실, ③ 원고 종원 AE, AB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144호로 위 2019년 정기총회 결의 중 Z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AB이 원고의 대표자 회장 지위에 있다는 점의 확인 등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8. 11. 2019년 정기총회에서 Z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2020. 11. 19.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AB이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는 Z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종중 재산인 총유물에 관한 것으로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내지 7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제소에 관한 원고의 총회결의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23,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6. 10. 31.자 정기총회, 2019년 정기총회에서 각 종중 재산 보존 목적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을 결의하였는데, 그 대상 부동산에 이 사건 제1토지는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제2 내지 7토지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년 정기총회에서 '총회를 대체하는 대의원제를 신설, 삽입하고, 이사회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 이후 이루어진 원고의 2020. 10. 17.자 대의원 정기총회(이하 '2020년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하여 부동산 근저당권 등에 관한 소 제기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대상 부동산에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전체 종원의 수가 2,000명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 종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의원을 통한 간접적 방식의 종중 총회 운영이 오히려 합리적, 효율적 운영방식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여기에 2019년 정기총회를 통해 개정된 원고 정관 제15조의3이 '대의원의 수 배정 및 위촉, 임명은 공정하게 32개 지파별 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위촉한다.'라고 정함으로써 공정한 대의원제 운영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대의원제 방식의 총회 운영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으로 원고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2), ② AE, AB은 관련 민사 소송에서 위와 같이 총회를 대의원제로 대체하고 이사회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결의가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20년 정기총회의 추진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 요건인 종중 총회 결의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재욱

판사강경묵

판사김태형

별지

중이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등 참조).